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020
----------	-------

발의연월일 : 2026. 9. 2.

발 의 자 : 정혜경·전종덕·손 솔
최혁진·황운하·이성운
김 윤·윤종오·김재원
김준형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5·18민주화운동은 국가권력의 반민주적·반인권적 폭력에 맞서 시민들이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지켜낸 역사임.

그러나 현행법상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처벌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피해자·사망자·유족을 향한 조롱·모욕·희화화 등 2차 가해 행위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 5·18기념재단의 모니터링 결과 온라인상 왜곡·편향 게시물·댓글·영상은 2024년 한 해 5,182건으로 전년 대비 200% 증가하였고, 유튜브 내 왜곡 콘텐츠는 538% 급증하였음. 최근에는 한 기업이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에 이를 희화화하는 상업적 이벤트를 진행하였음에도 현행법상 해당 법인에 대한 직접 제재 근거가 없어 처벌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피해자·사망자·유족을 향한 조롱·모욕·희화화 행위를 처벌 대상에 추가하고, 광고물을 처벌 매체에 명시하며, 법인·단체에

대한 양벌규정을 신설함으로써 5·18의 역사적 가치와 피해자의 명예를 지키고자 함(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 제목 중 “금지”를 “등의 금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유포한”을 “유포하거나, 5·18민주화운동 피해자·사망자·유족에 대하여 피해 사실을 부인·왜곡하거나 조롱·모욕·희화·화한”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전시물 또는”을 “전시물, 광고물 또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발언”을 “발언, 저작물 또는 인쇄물”로 한다.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5·18민주화운동에 대한 명예훼손 금지) 누구든지 공공연하게 비방할 목적으로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사실을 부인 또는 왜곡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양벌규정) 각 단체의 대표자나 각 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각 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각 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부과한다. 다만, 각 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u>유포한</u>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조(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u>등의 금지</u>) ① ----- ----- ----- <u>유포하거나,</u> <u>5·18민주화운동 피해자·사망자·유족에 대하여 피해 사실을 부인·왜곡하거나 조롱·모욕·희화화한</u>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u>전시물 또는 공연물의 전시·게시 또는 상영</u>	2. <u>전시물, 광고물 또는</u> ----- -----
3. 그 밖에 공연히 진행한 토론회, 간담회, 기자회견, 집회, 가두연설 등에서의 <u>발언</u>	3. ----- ----- ----- <u>발언, 저작물 또는 인쇄물</u>
② (생 략) <u><신 설></u>	② (현행과 같음) <u>제9조(5·18민주화운동에 대한 명예훼손 금지) 누구든지 공공연하게 비방할 목적으로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사실을 부인 또는 왜곡하거나 허위의</u>

<u><신 설></u>	<u>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u> <u>제10조(양벌규정) 각 단체의 대표</u> <u>자나 각 단체 또는 개인의 대</u> <u>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u> <u>이 각 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u> <u>에 관하여 제8조의 위반행위를</u> <u>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u> <u>각 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u> <u>조문의 벌금형을 부과한다. 다</u> <u>만, 각 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u> <u>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u> <u>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u> <u>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u> <u>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u>
---------------------------	---